

2014 서울시 기출문제

1. 다음은 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. 이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(상속·증여 포함)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법인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 취득세를 비과세,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- 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·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

① - 지방세법

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 이내에 신고납부한다(지법 20 ①).

2. 다음 중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개인이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
- ②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
- ③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경우
- ④ 법인이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
- ⑤ 개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

② - 지방세법

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.

※ 취득세 중과세 대상

(1)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대한 중과(지법 13 ①)

- ①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(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)
- ② 과밀억제권역(산업단지·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)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

(2)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(지법 13 ②)

①대도시(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)에서 법인을 설립(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)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·주사무소·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(그 설립·설치·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)하는 경우

②대도시(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)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

(3)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(지법 13 ⑤)

별장·골프장·고급오락장·고급주택·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

3. 다음 중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,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.

② 조세쟁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 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.

③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·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④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세법」 또는 「지방세관계법」에서 신고·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.

② - 지방세기본법

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(지기법 38 ②)

4. 다음은 「지방세법」상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.

②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

③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④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⑤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

에서 공제한다.

④ - 지방세법

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(지법 84의6 ②)

5. 「지방세법」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
- 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
- ② 레저세의 납세의무자
- ③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
- ④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
- ⑤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

③ - 지방세법

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(지법 150).

- ① 부동산, 기계장비(자동차세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는 제외),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
-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(자동차세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제외)의 납세의무자
- ③ 레저세의 납세의무자
- ④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
- ⑤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
- ⑥ 재산세(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)의 납세의무자
- ⑦ 승용차의 표준세율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[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(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)을 제외]의 납세의무자

6. 「지방세법」상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소득세 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.
- ②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.
- ③ 거주자가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
- ④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.
- ⑤ 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상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천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.

④ - 지방세법

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(지법 103 ①).

7. 「지방세법」상 지방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.
- ② 지방소비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.
- ③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「부가가치세법」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.
- ④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⑤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·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분리된 금액으로 신고·납부·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.

① - 지방세법

- ②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(지법 68).
- ③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「부가가치세법」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(지법 69 ①).
- ④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1%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(지법 69 ②).
- ⑤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·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·납부·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(지법 70).

8. 「지방세법」상 담배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비례세율이다.
- ②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(搬出)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,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.
- ③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,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.
- ④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(託送品)·별송품(別送品)으로 담배가 반입(搬入)될 때에는 그 반입한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,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.
- ⑤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,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.

③ - 지방세법

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

지로 한다.(지법 50)

9. 다음 중 「지방세법」상의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부동산, 선박, 항공기,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
-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.
- ④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이다.
- ⑤ 등기소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⑤ - 지방세법

- ① 부동산, 선박, 항공기,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등록면허세)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(지법 27 ①).
- ②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특별징수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(지법 31 ④).
- ③ 등록면허세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(또는 신고기한까지) 납부하였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상 무신고가산세, 과소신고가산세,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(지법 30 ④).
- ④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이다.(지법 28)

10. 다음 중 「지방세법」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토지 ② 건축물 ③ 항공기
- ④ 주택 ⑤ 자동차

⑤ - 지방세법

재산세는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 및 항공기(이하 이 장에서 “재산”)를 과세대상으로 한다(지법 105).

11. 다음은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이다. 이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레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②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- ③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.
- ④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- ⑤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.

② - 지방세법

레저세의 납세의무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(지법 45 ②).

12. 다음 중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증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?

-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
- 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
- ③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
- ④ 대도시 내에 있는 .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서의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
-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

④ - 지방세법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. 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)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지법 28 ②)

-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(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
- 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(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함에 따른 등기.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.

13. 지방세기본법상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
- ②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
- ③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
-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
- ⑤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할 때

⑤ - 지방세기본법

이는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징수유예의 취소 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다.

※ 납기전 징수사유(지기법 73 ①)

- ①국세, 지방세,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
- ②강제집행을 받을 때
- ③「어음법」 및 「수표법」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
- ④경매가 시작되었을 때
- ⑤법인이 해산하였을 때
- ⑥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
- ⑦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

14.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.
- ②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,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.

③ - 지방세기본법

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(지기법 92 ①).

15.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다. 이 중 옳은 것은?

-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·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·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50%를 감면한다.
-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10%를 감면한다.
-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%를 감면한다.
- ④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이며,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된다.
- ⑤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의 감면대상이 된다.

① - 지방세기본법

-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%를 감면한다(지기법 54 ②).
-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%를 감면한다(지기법 54 ②).
- ④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(지기법 53).
- ⑤ 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않는다(지기령 34).

16.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 다만,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.
- ②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의 청구대상에 포함 된다.
- ④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.
- 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, 계산착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·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·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.

③ - 지방세기본법

- ③「감사원법」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(지기법 117 ②).

17.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권에 대한 법정기일이다. 이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- 그 신고일
-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·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-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
- ③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-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
- ④ 양도담보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- 그 담보설정일
- 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-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

④ - 지방세기본법

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(보증인 포함)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- 납부통지서의 발송일(지기법 99 ①)

18.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. 이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·업종·규모,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.
- ②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, 조사기간,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.
- ③ 납세자가 장부·서류 등의 은닉, 제출지연,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 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- 지방세기본법

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(납세관리인 포함)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, 조사기간,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(지기법 111 ①).

19. 지방세기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로 중단된다.
- ② 지방세징수권의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.
- ③ 지방세징수권의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.
- ④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.
- ⑤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의 제기로 인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정지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.

⑤ - 지방세기본법

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(지기법 40 ③④).

①분납기간

②징수유예기간

③연부연납기간

④체납처분유예기간

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. 단,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·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.

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민법」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

20.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방소비세 -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

②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 - 과세기준일

③ 재산세 - 과세기준일

④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- 납기가 있는 달의 1일

⑤ 레저세 - 승차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

① - 지방세기본법

지방소비세 -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(지기법 34 ①)